

『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○정례회의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단서 규정 추가(안 제4조)

- 당 초 :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 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- 개정안 :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4. 검토의견

○ 내년 2차 정례회 집회일 11월 2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함.

5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공휴일 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규정된 날

① 일요일

②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

③ 1월 1일

④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
⑤ 석가탄신일(음력 4월 8일)

⑥ 5월 5일(어린이날)

⑦ 6월 6일(현충일)

⑧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
⑨ 12월 25일(기독탄신일)

⑩ 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
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.